의안번호	2210128
의 뢰 인	박정의원
회 답 일	2025.6.13.
추계번호	25B238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3제3항(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점검 등)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	안 제11조의4(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2제5호에 따른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배출저감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 여부</th><th>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th></tr>
<tr><td>1</td><td>안 제11조의3제3항(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점검 등)</td><td>–</td><td>• 미대상
– 현행법 제11조의2제7항[1]에 따라 관련 사업이 시행 중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함
– 참고로,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2025년 기준 6억 5,000만원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전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 중임
(단위: 백만원)
<table>
<tr><th>용역명</th><th>수행기간</th><th>수행기관</th><th>계약금액</th></tr>
<tr><td>25년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 사전 교육 및 기술지원</td><td>2024.8~2025.8</td><td>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td><td>127</td></tr>
</table>
자료: 환경부</td></tr>
<tr><td>2</td><td>안 제11조의4(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td><td>×</td><td>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td></tr>
</table>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배출저감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법 제11조의2제1항[2]에 따라 2020년부터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한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화학물질은 2020년 9종에서 2025년 53종으로 확대되었음

[표 1]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건수(2020년~2025년)

(단위: 건)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제출건수	221	35	26	19	14	231

자료: 환경부

○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8개의 지방자치단체[3]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있으며, 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자문비,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 참고로, 환경부는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인 8곳의 협의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4]

○ 개정안의 시행으로 협의체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

---

1)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8개 지방자치단체는 공주시, 군산시, 구미시, 서산시, 여수시, 천안시, 청주시, 충주시임

4) 환경부는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며, 유사 제도 운영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체의 협의체 설치가 증가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향후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알 수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범위 및 수준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사업명	사업기간	수행기관	계약금액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25.6.~2025.12.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만원

자료: 환경부

[참고자료]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요

(자료: 환경부)

❑ 저감 대상물질 및 사업장

○ 국내 다량 배출 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하며, 저감량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 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 벤젠 등 9종(2020년)→포름알데히드 등 53종(2025년)→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2030년)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고려,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2025년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및 관리대상 사업장은 306개소

❑ 배출저감제도 이행절차

○ (작성·제출) 사업장은 대상 물질의 취급량, 배출량, 저감기술, 저감방안 및 저감 목표등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전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하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자율 설정

○ (접수·검토) 저감계획서의 정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고 목표가 소극적이거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 배출저감 방안의 적절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평가하되, 기업 특성(업종, 규모, 공정 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유사 성격의 사업장 간 동일한 기준 적용)

○ (계획서 공개) 지자체는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제품 정보(물질함량, 취급량 등)를 제외한 요약계획서를 공개 가능

○ (이행확인)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하여 이행실적 확인